증권거래법위반·배임증재

[서울지방법원 2002. 9. 24. 2002고단6146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권순철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세종,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7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,000,000,000원에, 피고인 피고인 3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,000,000원에, 피고인 피고인 4를 벌금 20,000,000원에, 각 처한다.

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, 96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,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